

제 13 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1.0 사업시행계획

1.1. 사업시행계획

본 계획에서는 각 장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도정비를 위해 수립된 시설확충계획, 시설개량계획, 마을상수도 정비계획, 상수도 수요관리계획에 따른 부분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계화되어 추진중인 사업은 사업비가 기투자되어 본 절에서는 제외하였다.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내용을 다음<표 13.1-1>, <표 13.1-2>에 나타내었다.

<표 13.1-1> 사업시행 우선순위

구 분		시설확충계획	시설개량계획	마을상수도정비	수요관리계획	기 타
단 기 계 획	1 단계 2010년	•홍성급수분구 - 배수관로 - 배수가압장 •광천급수분구 - 배수관로 •홍동, 홍북급수분구 - 배수관로	•노후관교체 -홍성, 광천, 갈산 급수분구 •블록시스템 -홍성, 광천급수분구 •배수시설비교체 -홍성1,2, 광천, 결성, 구항, 갈산배수지	•마을상수도 -개량 : 19개소 -전환 : 7개소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 6개소 -전환 : 7개소	•유수율제고 -계량기교체 -GIS구축 •절수설비보급 •하수처리수재이용 •교육홍보	
	2 단계 2015년	•홍성급수분구 -송·배수관로 -배수감압변 -비상급수체계 •광천급수분구 -배수관로 •결성급수분구 -배수관로 -배수감압변 •서부급수분구 -서부배수지 -송·배수관로 -비상급수체계 •은하급수분구 -배수감압변 -비상급수체계 •구항급수분구 -구항배수지 -배수관로 •갈산, 홍동, 홍북급수분구 -배수관로	•노후관교체 -홍성, 광천, 갈산 급수분구 •블록시스템 -홍성, 광천, 결성, 서부, 은하, 갈산, 구항급수분구 •유량계설치 -홍성, 서부, 은하, 홍동급수분구	•마을상수도 -개량 : 1개소 -전환 : 29개소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 7개소 -전환 : 14개소	•유수율제고 -계량기교체 -GIS구축 •중수로보급 •교육홍보	

<표계속>

구 분		시설확충계획	시설개량계획	마을상수도정비	수요관리계획	기 타
장 기 계 획	3 단계 2020년	•홍성급수분구 -홍성3(확충) 배수지 -배수관로 •광천급수분구 -배수관로 •결성,서부,은하, 갈산,구항,홍북 급수분구 -배수관로 •홍동급수분구 -홍동배수지 -배수관로	•노후관교체 -홍성,광천,갈산 급수분구 •블록시스템 -홍성, 광천 급수분구	•마을상수도 -전환 : 1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전환 : 8개소	•유수율제고 -계량기교체 -GIS구축 •교육홍보	
	4 단계 2025년	•광천급수분구 -배수관로 -배수가압장 •결성,서부,은하, 갈산,구항,홍동, 홍북급수분구 -배수관로	•노후관교체 -홍성,광천,결성,서부,갈산 급수분구 •블록시스템 -홍성, 광천 급수분구	•마을상수도 -전환 : 9개소 •소규모급수시설 -전환 : 2개소	•유수율제고 -계량기교체 -GIS구축 •교육홍보	

<표 13.1-2>

사업시행 개요

구분	단기계획		장기계획		비고
	1단계(2010년)	2단계(2015년)	3단계(2020년)	4단계(2025년)	
1. 시설확충계획					
• 배수지(m³)	V=1,520	V=7,300	V=2,100	—	총계:V=11,640
홍성급수구역	—	V=5,000(신설)	V=1,500(증설)	—	기계획, 금회계획
광천급수구역	—	—	—	—	—
서부급수구역	—	V=1,400(신설)	—	—	금회계획
은하급수구역	—	V=800(신설)	—	—	기계획
갈산급수구역	V=420(신설)	—	—	—	기계획(갈산단지)
구항급수구역	—	V=100(증설)	—	—	
홍동급수구역	V=1,100(신설)	—	V=600(증설)	—	기계획, 금회계획
• 송수관로(m)	6,932	7,733	—	—	총계:14,665m
홍성급수구역	D500mm, 1,850m	D300mm, 2,233m	—	—	기계획, 금회계획
광천급수구역	—	—	—	—	
결성급수구역	—	—	—	—	
서부급수구역	—	D250mm, 5,454m	—	—	금회계획
은하급수구역	—	D200mm, 46m	—	—	기계획
갈산급수구역	D200mm, 737m	—	—	—	기계획
구항급수구역	—	—	—	—	
홍동급수구역	D250mm, 4,345m	—	—	—	기계획
• 배수관로(m)	18,765	57,782	42,862	22,198	총계:141,606
홍성급수구역	11,172	7,131	3,063	—	21,367
광천급수구역	3,177	4,761	2,810	1,463	12,211
결성급수구역	—	1,639	1,103	1,124	3,866
서부급수구역	—	6,226	341	1,389	7,955
은하급수구역	—	—	1,916	1,098	3,014
갈산급수구역	—	841	2,102	2,224	5,168
구항급수구역	—	214	1,675	1,450	3,338
홍동급수구역	1,779	36,231	7,007	6,486	51,503
홍북급수구역	2,637	740	22,845	6,963	33,184

<표계속>

구분	단기계획		장기계획		비고
	1단계(2010년)	2단계(2015년)	3단계(2020년)	4단계(2025년)	
• 배수가압장(개소)	1개소	—	—	1개소	총계:2개소
홍성급수구역	1개소	—	—	—	5,663m³/일
광천급수구역	—	—	—	1개소	327m³/일
결성급수구역	—	—	—	—	
서부급수구역	—	—	—	—	
은하급수구역	—	—	—	—	
갈산급수구역	—	—	—	—	
구항급수구역	—	—	—	—	
홍동급수구역	—	—	—	—	
• 배수감압변(개소)	—	3개소	—	—	총계:3개소
홍성급수구역	—	1개소	—	—	
광천급수구역	—	—	—	—	
결성급수구역	—	1개소	—	—	
서부급수구역	—	—	—	—	
은하급수구역	—	1개소	—	—	
갈산급수구역	—	—	—	—	
구항급수구역	—	—	—	—	
홍동급수구역	—	—	—	—	
• 비상급수계획(개소)	—	9개소	—	—	총계:9개소
홍성급수구역	—	6개소	—	—	
광천급수구역	—	—	—	—	
결성급수구역	—	—	—	—	
서부급수구역	—	1개소	—	—	
은하급수구역	—	2개소	—	—	
갈산급수구역	—	—	—	—	
구항급수구역	—	—	—	—	
홍동급수구역	—	—	—	—	

<표계속>

구 분	단기계획		장기계획		비 고
	1단계(2010년)	2단계(2015년)	3단계(2020년)	4단계(2025년)	
2. 시설개량계획					
• 노후관교체	73,317	48,237	34,729	45,081	
홍성급수구역	44,300	29,145	20,984	22,151	
광천급수구역	24,492	16,115	11,601	12,247	
결성급수구역	—	—	—	8,001	
서부급수구역	—	—	—	420	
은하급수구역	—	—	—	—	
갈산급수구역	4,525	2,977	2,144	2,262	
구항급수구역	—	—	—	—	
홍동급수구역	—	—	—	—	
• 블록시스템 구축	694개소	3,299개소	2,079 개소	2,079개소	
홍성급수구역	437개소	1313개소	1313개소	1313개소	
광천급수구역	257개소	766개소	766개소	766개소	
결성급수구역	—	52개소	—	—	
서부급수구역	—	334개소	—	—	
은하급수구역	—	432개소	—	—	
갈산급수구역	—	335개소	—	—	
구항급수구역	—	67개소	—	—	
홍동급수구역	—	—	—	—	
• 유량계 설치	—	4개소	—	—	
• 배수지설비 교체	기계·전기·계측제어				
3.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 개량 : 25개소 — 전환 : 24개소	— 개량 : 8개소 — 전환 : 43개소	— 전환 : 19개소	— 전환 : 12개소	
4. 기 타	— 계량기 교체 — 절수기 보급	— GIS구축 — 하폐수처리수이용	— 중수도 보급 — 교육 및 홍보		

2.0 소요사업비

본 계획에 따라 시설확장, 시설정비 및 기타 계획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총 77,595 백만원으로 단계별로 확장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13.2-1>

소요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단계(2010년)	2단계(2015년)	3단계(2020년)	4단계(2025년)	비고
총 사업비	77,595	19,938	26,264	18,390	13,003	
소 계	37,906	5,349	16,541	11,719	4,297	
1. 시설확충계획	34,291	4,807	15,016	10,592	3,876	
• 배수지	3,349	-	1,397	1,952	-	
홍성급수분구	1,328	-	-	1,328	-	
광천급수분구	-	-	-	-	-	
결성급수분구	-	-	-	-	-	
서부급수분구	1,254	-	1,254	-	-	
은하급수분구	-	-	-	-	-	
갈산급수분구	-	-	-	-	-	
구항급수분구	143	-	143	-	-	
홍동급수분구	624	-	-	624	-	
• 송수관로	2,161	-	2,161	-	-	
홍성급수분구	672	-	672	-	-	
광천급수분구	-	-	-	-	-	
결성급수분구	-	-	-	-	-	
서부급수분구	1,489	-	1,489	-	-	
은하급수분구	-	-	-	-	-	
갈산급수분구	-	-	-	-	-	
구항급수분구	-	-	-	-	-	
홍동급수분구	-	-	-	-	-	
• 배수관로	27,544	3,823	11,268	8,640	3,812	
홍성급수분구	4,477	2,263	1,489	725	-	
광천급수분구	2,934	781	1,122	743	288	
결성급수분구	812	-	345	217	249	
서부급수분구	2,232	-	1,803	50	379	
은하급수분구	440	-	-	280	160	
갈산급수분구	755	-	123	307	325	
구항급수분구	487	-	31	244	212	
홍동급수분구	8,502	260	6,209	1,062	972	
홍북급수분구	6,905	519	146	5,013	1,227	

<표계속>

구 분	계	1단계(2010년)	2단계(2015년)	3단계(2020년)	4단계(2025년)	비고
• 가압시설	1,048	984	—	—	64	
홍성급수분구	984	984	—	—	—	
광천급수분구	64	—	—	—	64	
결성급수분구	—	—	—	—	—	
서부급수분구	—	—	—	—	—	
은하급수분구	—	—	—	—	—	
갈산급수분구	—	—	—	—	—	
구항급수분구	—	—	—	—	—	
홍동급수분구	—	—	—	—	—	
• 감압시설	150	—	150	—	—	
홍성급수분구	50	—	50	—	—	
광천급수분구	—	—	—	—	—	
결성급수분구	50	—	50	—	—	
서부급수분구	—	—	—	—	—	
은하급수분구	50	—	50	—	—	
갈산급수분구	—	—	—	—	—	
구항급수분구	—	—	—	—	—	
홍동급수분구	—	—	—	—	—	
• 비상급수체계	39	—	39	—	—	
홍성급수분구	27	—	27	—	—	
광천급수분구	—	—	—	—	—	
결성급수분구	—	—	—	—	—	
서부급수분구	4	—	4	—	—	
은하급수분구	8	—	8	—	—	
갈산급수분구	—	—	—	—	—	
구항급수분구	—	—	—	—	—	
홍동급수분구	—	—	—	—	—	
• 설계비	1,546	221	666	478	181	
기본설계	516	74	222	160	60	
실시설계	1,030	147	444	318	121	
• 감리비	2,069	321	859	649	240	

<표계속>

구 분	계	1단계(2010년)	2단계(2015년)	3단계(2020년)	4단계(2025년)	비고
2. 시설개량계획	35,536	12,580	8,722	6,165	8,069	
• 노후관 교체	33,870	12,270	8,073	5,812	7,715	
홍성급수분구	19,023	7,228	4,756	3,424	3,614	
광천급수분구	11,083	4,212	2,771	1,995	2,106	
결성급수분구	1,519	—	—	—	1,519	
서부급수분구	61	—	—	—	61	
은하급수분구	—	—	—	—	—	
갈산급수분구	2,184	830	546	393	415	
구항급수분구	—	—	—	—	—	
홍동급수분구	—	—	—	—	—	
• 블록시스템구축	1,386	118	561	353	353	
홍성급수분구	744	74	223	223	223	
광천급수분구	435	44	130	130	130	
결성급수분구	9	—	9	—	—	
서부급수분구	57	—	57	—	—	
은하급수분구	73	—	73	—	—	
갈산급수분구	57	—	57	—	—	
구항급수분구	11	—	11	—	—	
홍동급수분구	—	—	—	—	—	
• 유량계설치	88	—	88	—	—	
• 배수지설비 교체	192	192	—	—	—	
3.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1,296	962	334	—	—	
• 마을상수도	838	774	64	—	—	
• 소규모급수시설	458	188	270	—	—	
4. 기 타	2,857	1,047	668	505	637	

주) 기타사업비는 홍성군 물수요관리 시행계획(2007. 12) 상의 계량기 교체, GIS구축, 중수도보급, 절수설비보급, 하수처리수재이용 및 교육홍보 사업비임

3.0 재정계획

3.1 재원조달방안 및 관련규정 검토

3.1.1 재원조달방안 검토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수질환경 기준의 강화에 부응하여 용수공급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기업에 의한 시설운영이나 건설의 민간 자본유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경영의 합리화, 투자재원의 민간자본의 유치, 운영관리의 전문화로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민영화에 의한 투자재원 조달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수도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수혜자 부담금 등 제도적 개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원조달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토록 한다.

가. 기본방향

- 물값 현실화 등을 통한 신규투자 재원확보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강구
- 수익자 부담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시설에 의한 수익금의 재투자
- 외자조달에 있어서는 장기저리 공공차관의 적극도입
- 투자재원의 민자자본유치방안 강구

나. 국고보조 방안

국고지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비 재원으로 투자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행되는 국고보조는 특정 시설물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도시별로 시급을 요하는 투자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시설물별로 일정율을 정하여 지원하기는 어렵다. 또한 부족한 국고재원을 수도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고보조는 기본적으로 시설개량 등 그 투자가 단기적으로 투자효과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 시행한다.

기본적으로 시설확충 투자비는 건전한 수도사업 경영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설확충에 시급을 요하고 근본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국고지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성군은 재정여건이 취약한 바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국고보조 및 국고융자를 얻도록 계획하였다.

다. 지방비 확충방안

지방비는 급수이익, 일반회계보조 및 외부차입으로 구성된다. 이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급수이익이다.

1) 급수이익

급수수익은 최소한 급수비용과 차입금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급수비용에는 시설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는바 적절한 급수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정도의 자금이 내부유보됨으로서 재투자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시설확충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바 이는 시설투자비에 대한 일정 투자보수를 수도요금에 반영하므로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수도요금에는 투자보수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투자보수는 운영중인 시설고정자산의 9%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요금인상 억제로 인하여 투자보수율은 매우 낮다.

따라서, 투자보수를 반영한 적정 수도요금을 책정해 나감으로써 투자비 대한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상수도 재정 건전화를 기할수 있게 된다.

2) 국고보조

일반회계 보조자금은 사업의 지방세수입과 중앙정부의 국세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홍성군의 상수도 공급시설 사업의 경우 급수이익에 비하여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어 급수수익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일반회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도록 한다.

3) 외부차입금

외부차입금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융자차입과 지역개발공채발행이나 금융기관 차입으로 구성된다. 지역개발공채 발행은 지역별 소화능력 차이에 따라 달라지며 발행가능액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일반 금융기관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이자율이 재정융자나 지역개발공채 이자보다 매우 높으며 대부분 단기성 차입이다. 계속적인 투자계획 집행에 따라 외부차입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는 것은 수도사업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차입은 수도사업 재정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낮은 재정융자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4) 민자유치방안

상수도사업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민자유치는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의해 가능하다. 환경기초시설중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민자유치촉진법에 열거된 환경기초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제1종 시설	제2종 시설
• 수도(정수장 포함) •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포함)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 폐수종말처리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제1종 시설의 경우 투자한 기업이 시설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나 일정기간 수익을 취할 수 있고, 제2종 시설의 경우 민간기업이 소유권을 가질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민자유치사업은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시행자 결정순서로 추진된다.

참고적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을 살펴보면

● 민자유치시 현행 수준의 국고보조를 당분간 유지한다.

민자 유치시 국고지원을 축소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보다 불리하게 되어 민자유치는 추진하기 어려워 진다. 따라서, 환경부는 당분간 민자를 유치할 경우에도 현행수준의 국고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만, 민자유치가 활성화되고 민자유치시 운영비 절감 규모가 커지면 국고보조 수준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설사용료 수준 및 징수방법을 제시한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민자유치기본계획은 시설사용료 결정방식을 “사업시행자 지정시 제시된 사용료를 기초로 매년 전년도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경정신고토록 하고, 시설에 대한 대수요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협상에 의해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민자유치사업을 신청한 사업시행자가 출자규모 및 운영비 수준을 감안하여 제시한 시설사용료를 주무관청이 비교 형량하여 사업자 선정시 시설사용료까지 동시에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수도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므로 협상을 통하여 시설사용료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지

방자치단체는 현행의 사용료를 상한으로 하여 민간기업의 실제 운영비에 적정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시설사용료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설사용료 결정방식을 적용하여 민간기업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표준 운영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기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의 조건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민자유치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 지원 또는 장기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수도업무의 민자유치는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입한 예가 없어 당장 도입하기는 모든면에서 무리가 있으므로, 관련법 및 제도가 정비되면, 타당성있는 사업을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될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1.2 관련규정 검토

가. 수도정책과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2009.4, 환경부)

<표 13.3-1>

국고보조(융자)율

사 업 명	형태	보조율(%)	비 고
<환경개선특별회계>			
○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융자		*가뭄지역 10% 가산
- 시지역		50	
- 군지역		60	
○ 기초생활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보조	50	
○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보조	50	
○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사업	보조	100	(예정)
<균형발전특별회계>			
○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보조	50	*상수도 소관 균특회계 사업 보조율을 70%로 변경 추진중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보조	70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보조	80	
○ 고도정수처리시설	보조	50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보조	50	

나. 상수도분야 환경부 국비지원 비율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 계속사업 80%, 신규사업 70%
-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70%
- 강변여과수개발사업 : 계속사업 50%, 신규사업 70%
-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 계속사업 50%, 신규사업 70%
- 소규모수도시설개량 : 계속사업 50%, 신규사업 70%
- 저소득층옥내급수관개량지원 : 50%
- 기초생활수급가구수도분기관연결지원 : 50%
-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용자) : 시 50%, 군 60%, 가뭄지역 10% 가산

3.2 재원조달계획

3.2.1 국고보조율 적용

사업투자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사업별 국고보조(용자)율은 상수도 분야 환경부 국비지원 비율을 검토하여 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표 13.3-2> 국고보조(용자)율

구 분		국고보조사업명	국비지원비율	비 고
시설확충	읍지역(배수지)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용자)	60%	군지역
	면지역	농어촌생활용수개발	70%	신규사업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소규모수도시설개량	70%	신규사업

3.2.2 재정계획

사업별 국고보조(융자)율은 상수도분야 환경부 국비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13.3-3>

재 정 계 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단계(2010년)	2단계(2015년)	3단계(2020년)	4단계(2025년)	비 고
총 계	합 계	77,595	19,938	26,264	18,390	13,003	
	국 비	20,863	1,598	9,460	7,044	2,761	
	군 비	56,732	18,340	16,804	11,346	10,242	
시 설 확 충	계	계	37,906	5,349	16,541	11,719	4,297
		국 비	19,956	925	9,226	7,044	2,761
		군 비	17,950	4,424	7,315	4,675	1,536
	읍 지 역	소 계	1,328	-	-	1,328	-
		배수지 증설 국 비	797	-	-	797	-
		기타 시설확충 군 비	9,740	4,029	3,360	1,998	353
	면 지 역	소 계	27,370	1,321	13,180	8,924	3,945
		국 비	19,159	925	9,226	6,247	2,761
		군 비	8,211	396	3,954	2,677	1,184
	시 설 개 량	군 비	35,536	12,580	8,722	6,165	8,069
마 을 상 수 도 소 급 수 시 설	계	계	1,296	962	334	-	-
		국 비	907	673	234	-	-
		군 비	389	289	100	-	-
상 수 도 요 관 리	군 비	2,857	1,047	668	505	637	